

의안 번호	2077	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4. 7.(금) 박경흠 의원 외 9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4. 13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4. 21.(금)

2. 제안설명 요지(의회운영위원장 박경흠)

- 행정안전부 권고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내실을 다지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정비(제3조 제5호, 제6호, 제8호)
-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정비(제5조)
- 공무국외출장 심의의 구체적 기준 마련(제5조의2)
-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 신설(제8조의2)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의 내실을 다지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근거법규

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(公有財産) 관리

차.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